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2

2025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562호)

나. 회의경과: 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2025. 8. 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영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황영각 의원

○ 제2차 회의: 2025. 9. 3.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부구청장】
  - 국·과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기획경제국】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부구청장 김진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일반회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음

○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원으로, 2025년도 재산세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싼 대비 증가된 초과 세입을 반영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 6,489만 8천원을 편성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야 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 6,633만 3천원을 편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서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검토의견】

세입 분야

가. 예산안 총 규모

○ 기정예산 대비 총 0.65% 증가한 1조 5,378억 8,008만 2천원 임.

- 본 예산, 제1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은 1조 5,278억 8,008만 2천원이고,
-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100억원 임.

○ 기정액 대비 0.65% 증가(일반회계 0.68%)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제2회 추경	증감률(%)
계	1,537,880,082	1,527,880,082	10,000,000	0.65%
일반회계	1,487,464,570	1,477,464,570	10,000,000	0.68%
특별회계	50,415,512	50,415,512	-	0.00%

나. 추경재원

○ 재산세 세입경정에 따른 증액분 100억원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재산세	기타 (이자수입 등)
계	10,000,000	-	-	-	10,000,000	-
일반회계	10,000,000	-	-	-	10,000,000	-
특별회계	-	-	-	-	-	-

세출 분야

가. 추경규모 : 10,000백만원(일반회계 10,000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0,000,000	10,000,000	-
신 규 사 업	14,161,898(1개 사업)	14,161,898(1개 사업)	-
증 액 사 업	566,333(1개 사업)	566,333(1개 사업)	-
감 액 사 업	△4,728,231(1개 사업)	△4,728,231(1개 사업)	-

나. 주요 편성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추경편성액	비고
1	주민자치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및 부대경비 등]	14,161,898	**신규**
2	보육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566,333	

다. 세출예산 편성 현황

○ 기능별

(단위:백만원)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 경	사 회 복 지
10,000 100.0%	14,162	-	-	-	-	566
	141.62%	-	-	-	-	5.66%
	보 건	농 림 해 양 수 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
	-	-	-	-	-	△4,728
	-	-	-	-	-	△47.28%

○ 조직별

(단위:백만원)

계	행정국	기 획 경제국	복 지 생활국	미 래 문화국	도 시 환경국	안 전 교통국	미래전략 기획단	보건소	의 회 사무국
10,000	14,162	△4,728	14,162	-	-	-	-	-	-
100.0%	141.62%	△47.28%	141.62%	-	-	-	-	-	-

○ 성질별

(단위:백만원)

계	인 건 비	물 건 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내 부 거 래	예비비및기타
10,000	176	225	14,327	-	-	△4,728
100.0%	1.76%	2.25%	143.27%	-	-	△47.28%

라. 추경편성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예 산 액
1	주 민 자 치 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종합 검토의견

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 제출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해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이 증가하여,

총 1조 5,378억 8,008만 2,000원임.

○ 추경액의 재원을 살펴보면,

재산세 세입 경정에 따른 증액분 100억원이고,

- '예비비' 감액분 47억 2,823만원을 더한 147억 2,823만원을,
- 신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141억 6,189만원으로 하고,
- 기편성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5억 6,633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경정하고자 하는 것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 산 세	소 계	쇼비쿠폰	보 육 료	예 비 비
기 정 액	470,507,809	100,468,678	63,591,959	29,506,855	7,369,864
추가경정액	10,000,000	10,000,000	14,161,898	566,333	△4,728,231
최종예산안	480,507,809	110,468,678	77,753,857	30,073,188	2,641,633

○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1]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를 근거로 추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라 의회는 “예산의 심의·

---

1)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확정"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전체적인 관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과다 추계한 재산세를 감편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적합성, 시급성과 연내집행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안 편성 과정과 절차와도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있음

○ 이처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예비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이나 의회가 삭감한 사업예산에 대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등 예비비 편성과 사용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악용해 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따라서 제2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다음 연도 결산검사에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또한, 5억 6,633만원을 증액 요구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5억 7,761만원을 증편성한 사업으로 거듭되는 추가 편성 요구가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인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소 관

□ 개 요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8%, 141억 6,189만 8천원 증가한 4,211억 3,691만 8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731억 8,990만 7천원임(기정예산 대비 3.94%, 141억 6,189만 8천원 증가).
- 특별회계 추경 편성 내역은 없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강 남 구	1,537,880,082	1,527,880,082	10,000,000	0.65%
일 반 회 계	1,487,464,570	1,477,464,570	10,000,000	0.68%
특 별 회 계	50,415,512	50,415,512	-	0.00%
행 정 안 전 위 원 회	421,136,918	406,975,020	14,161,898	3.48%
일 반 회 계	373,189,907	359,028,009	14,161,898	3.94%
정 책 홍 보 실	3,718,944	3,718,944		0.00%
감 사 담 당 관	331,012	331,012		0.00%
중대재해예방실	226,635	226,635		0.00%
행 정 국	368,913,316	354,751,418	14,161,898	3.99%
주 차 장 특 별 회 계	47,947,011	47,947,011	-	0.00%

□ 세출예산 편성 내역 검토(“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증편성 관련)

가. 행정국

□ 주민자치과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신규) (p.177)

○ 사업내용: (1차)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 (2차) 90%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77,753,857	63,591,959	14,161,898	22.3%
국고보조금	63,520,935	63,520,935	-	0.0%
시비보조금	-	-	-	0.0%
특별조정교부금	71,024	71,024	-	0.0%
자체재원	14,161,898	-	14,161,898	100%

○ 의견: 본 사업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137억6,086만원(구비)과 인건비와 홍보비 등 부대비용 4억 103만 8천원을 반영함.

- 주요 재원은 2025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반영한 재산세 100억원, 예비비47억2,823만1천원이며, 시비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부 예정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임

-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지급 예정임
- 지급 방식은 먼저 1차(7. 21. ~ 9. 12.)로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지급하고, 2차 지급(9. 22. ~ 10. 31.)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함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소요 예산은 강남구의 경우 관내 532,786명 기준 1차·2차를 합해 총 1,384억원임. 이 중 구비 분담액(10%)은 약 138억원으로 추계됨

-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서울시의 경우 국비 75%(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90%), 지방비 25%로 통보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규모(안)

('25.7.11. 행정안전부 시달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일 반[1] 1차 150천원·2차 100천원	차상위 1차 300천원·2차 100천원	기초수급자 1차 400천원·2차 100천원	구비 분담액
대상자수[2]	532,786명	514,752명	964명	17,070명	국75: 시15: 구10
지 급 액	137,609	128,688	386	8,535	141억원
1차[3]	84,330	77,213	289	6,828	
2차	53,279	51,475	96	1,707	

1) 소득 상위 10% 인원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 대상자 인원 수 변동가능

2) '`25.6.18. 국내 거주 국민 중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해외체류, 건강보험급여정지자 등 제외. 이의신청에 따라 총 대상자 수 변동가능

3) 1차: '25. 7. 21.(월) ~ '25. 9. 12.(금) / 2차: '25. 9. 22.(월) ~ '25. 10. 31.(금)

□ 종합 의견

○ 금번 추경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全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방비 25% 부담을 시와 구가 6대 4 비율로 분담하도록 확정함에 따라 자치구들은 재정력 수준 등 상관없이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대응 분담액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볼 수 있음.

○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부득이하다고 사료되며, 의회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예산심의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집행을 위한 구비 분담액의 재원은 재산세와 예비비를 활용함.

- 다만, 재산세는 공시가격·주택가격 결정사항 반영으로 중기적 추계

가능하고 자체세원 활용으로 재정자립도·재정분권 취지에 부합하나, 공시가격 조정·부동산 경기에 민감, 체납률·환급 등 불확실성 등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예비비[3]는 예비비 편성 사용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를 통해 구비를 마련할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신속한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정운영 경직성이라는 부담을 초래하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과 사업 효과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 제 도 시 위 원 회　소 관

○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추경증감액	증감율(%)
경제도시위	205,014,826	13.78%	209,743,057	14.20%	△4,728,231	△7.94 %
기획경제국	54,803,758	3.68 %	59,531,989	4.03 %	△4,728,231	△7.94 %
도시환경국	48,482,200	3.26 %	48,482,200	3.28 %	0	0.00 %
미래전략기획단	27,485,065	1.85 %	27,485,065	1.86 %	0	0.00 %
보 건 소	74,243,803	4.99 %	74,243,803	5.03 %	0	0.00 %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 없음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2국 1단 1소: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 강남구 전체 기정예산

본예산과 간주처리 포함 기정액 1조 5,278억 8,008만원 중

(일반회계 1조 4,774억 6,457만원, 특별회계 504억 5,512만원)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은

2,111억 8,000만원이고

(일반회계 2,097억 4,305만원, 특별회계 14억 3,695만원)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요구는**

- 총 편성요구액 합계 100억원 중

  예비비 47억 2,823만원을 사용하는 것임.

  (전액 일반회계, 민생회복지원 소비쿠폰 재원 목적)

○ **2차 추가경정 요구액을 전액 승인할 경우**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총 규모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액 2,097억 4,305만원 대비

  2.25% 감소한 2,064억 5,177만원이 됨.

  (일반회계 2,050억 1,482만원, 특별회계 14억 3,695만원)

○ **총 규모 ····· 2,064억 5,177만원(감 47억 2,823만원)**

○ 일반회계 ····· 2,050억 1,482만원(감 47억 2,823만원)

○ 특별회계 ····· 14억 3,695만원(변 동 없 음)

세입분야

○ **예산안 총 규모 (강남구 전체)**

- 기정예산 규모는 1조 5,278억 8,008만원인데,

  요구액이 전액 편성되면 예산규모는 1조 5,378억 8,008만원임.

○ **2차 추가경정 관련 세입 여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전체 강남구 세입예산 중 세무3과로 들어온 현년도 **지방세수입** 5,710억원 중 재산세 세입경정에 따른 100억원을 이번 회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편성함.

세출분야

○ **예산안 총 규모 (강남구 전체)**

- 제2차 추가경정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 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없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된 100억원,

예비비 70억원, 내부유보금 3억 6,986만원까지 동원되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임.

○ **2차 추가경정 관련 세출 여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행을 결정하였으며, 1차 지급분은 우선 국비로 충당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부터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편성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 및 구청장이 협의회를 통하여 분담 비율을 조정한 결과 시6:구4 부담하게 됨. 다만, 이번 추경 재원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비에서는 감액만 있을 뿐 추진하는 사업 지출에 대한 투입은 전혀 없음.

종합의견

○ **예비비 지출**

- 갑작스런 정부 주도의 시책에 재정 지출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

- 제1회 추경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사업 운영 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이어 제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비록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단발성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적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보임.

-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기존 사업 추진과 다음연도 계속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협의체를 통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장기 과제를 정하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복 지 문 화 위 원 회　소 관

□ 개 요

○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7%, 5억 6,633만 3천원 증가한 7,910억 7,662만 1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7,900억 4,507만 9천원임(기정예산 대비 5.66%, 5억 6,633만 3천원 증가).
- 특별회계 추경 편성 내역은 없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강남구			1,537,880,082	1,527,880,082	10,000,000	0.65%
	일반회계		1,487,464,570	1,477,464,570	10,000,000	0.68%
	특별회계		50,415,512	50,415,512	-	0.00%
복지문화위원회			791,076,621	790,510,288	566,333	0.07%
	일반회계		790,045,079	789,478,746	566,333	5.66%
		복지생활국	705,859,090	705,292,757	566,333	0.08%
		미래문화국	84,185,989	84,185,989	-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31,542	1,031,542	-	0.00%

□ 세출예산 편성 내역 검토(“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증편성 관련)

○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 편성 내역은 1건으로,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구비 5억 6,633만 3천원을 증편성 요청함.

- 참고로 본 사업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 시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5억 7,761만 5천원(국259,927천원, 시222,382천원, 구95,306천원)을 증편성한 바 있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설명서 p.183]

○ 사업내용: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	기정액 (B)	추경요구액 (C)	증감률 (D=C/B)
계	30,073,188	29,506,855	566,333	1.9%
국고보조금	13,278,085	13,278,085	0	0%
시비보조금	11,360,139	11,360,139	0	0%
자체재원	5,434,964	4,868,631	566,333	11.6%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매칭 구조임.

○ 금번 추경 증편성 사유는

▸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분(종전 대비 5%)[4]과

4) <참고> 2025년 0~2세 영유아, 장애아 보육료 월 지원 단가(아동 1인당)

(단위 : 만원)

구분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5% 인상)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계	**116.9**	**81.7**	**62.6**	**127.3**	**122.7**	**85.9**	**65.8**	**133.6**
부모보육료	54.0	47.5	39.4	58.7	56.7	50.0	41.4	61.6
기관보육료	62.9	34.2	23.2	68.6	66.0	35.9	24.4	72.0

자료: 교육부

▸ 하반기 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이 반영된 변경내시안(아래 표 참고)에 맞춰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45%)	시 비(38.5%)	구 비(16.5%)
기정액(A=a+b)	29,506,855	13,278,085	11,360,139	4,868,631
본 예 산(a)	28,929,240	13,018,158	11,137,757	4,773,325
1차 추경(b)	577,615	259,927	222,382	95,306
변경내시액(안)(B)	32,939,178	14,822,630	12,681,584	5,434,964
추가소요(A-B)	3,432,323	1,544,545	1,321,445	566,333

(자료: 기획예산과)

○ 본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구비 부분만 편성·제출되었고 국시비 세입 및 세출 편성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이는 서울시 추경 일정 등으로 인해 확정된 변경내시액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임의 안내받은 변경내시안을 바탕으로 구비 부분만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유와 향후 국시비 세입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덧붙이자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24조[5]에서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지방재정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바,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세입에 계상한 후 이와 연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5)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으로 사료됨. 이에 계획적 재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을 위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종합 의견

○ 금번 추경은 강남구 예산 성립 후 정부 추경 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 요건[6]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인상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사료됨.

○ 다만, 본 사업과 같이 재원 구조가 국시구비 매칭일 경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구비 부담액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는 매칭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구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계획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

이에 집행부에서 향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꾀함과 동시에 매칭 사업의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 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　　타: “없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562

제출일시 : 2025. 8. 1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 **총규모 ---------- 1,537,880,082천원**

(증 10,000,000천원)

○ **일반회계 ---------- 1,487,464,570천원**

(증 10,000,000천원)

▶ **세입**

가. 기정예산 ---------- 1,477,464,570천원

나. 추경예산 ---------- 10,000,000천원

▶ **세출**

가. 기정예산 ---------- 1,477,464,570천원

나. 추경예산 ---------- 10,000,000천원

○ **특별회계 ---------- 50,415,512천원**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4. 따로붙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